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종로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우리구 명예구민증수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안 제2조제1항)

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외국인

나. 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 구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종로구민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함. (안 제3조)

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하고 메달이나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음. (안 제5조제1항)

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구정 관련 위원회 및 구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안 제7조)

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9조제2항)

III. 검토의견

1. 배경 및 경위

- 본 제정조례안은 종로구의 구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 대해 “종로구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그 기여한 공로를 선양함과 아울러 국제교류 협력 증대 및 우호증진을 통하여 종로구를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효과는 물론 나아가 우리구에 대한 구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명예시민 또는 명예구민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나 문화의 발전 등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그 지역에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수여하는 칭호로서,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관례상 또는 외교상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04년 11월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는 동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사항

- 첫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안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수여대상을 주로 외국인에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외교포, 타시·도 및 자치구 인사까지 포함하여 수여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경향이며, 본 조례안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우리 종로구를 더욱 더 알리고 종로구와 관계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종로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을 내·외국인으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내·외국인으로 하고 있고, 현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4개 자치구중에도 마포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외국인을 수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수여대상은 반드시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주소가 종로구(원서동 171번지, 돌리나라)인 “아기공룡 둘리”가 부천시의 명예시민이 된 사례를 보면,

국내 유일의 만화정보센터(만화박물관)를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는 “둘리”가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통해 대중문화의 해외수출에 앞장서 왔고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받는 등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에 착안하여 부천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둘리의 거리” 조성, 퍼레이드, 그림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부천시를 “만화산업의 메카”로 부각시키는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 셋째. 명예구민증 수여후의 사후관리(안 제6조)와 관련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과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어떤 권리나 의무가 주어지는 등 종로구민으로서의 법적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예우차원에서 배려하는 의미이므로, 이분들을 통하여 종로구를 국내·외에 알리고 종로구를 위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초청은 물론 역사문화탐방 등 우리구의 문화유적 알리기와 홍보물 발송 등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IV. 참고사항 : 타 자치단체 명예시(구)민증수여조례 사례

구 분	수여 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외국인	10인 이내(시의원, 공무원, 외부인사)
성북구	내·외국인	11인 이내(구의원, 공무원, 외부인사)
마포구	외국인·해외입양인	7인 이내(구의원, 공무원, 외부인사)
양천구	내·외국인	공적심사위원회(통합운영)
강동구		7인 이내(구의원, 공무원, 외부인사)
부산광역시	내·외국인	시정조정위원회(통합운영)
대구광역시		구성치 않음(시의회 의결)
인천광역시		구성치 않음(시의회 동의)
광주광역시		구성치 않음(시의회 의결)
대전광역시		구성치 않음(시의회 의결)
울산광역시		구성치 않음(시의회 의결)